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고 분산되어 있는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관련 정원의 직급을 상향하고(4·5급 1명 → 4급 1명)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배정(한국예술종합학교 5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 6급 1명, 해외문화홍보원 6급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 8급 1명, 국립국악원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로 이관하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소관의 국어사전업무를 어문연구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와 아시아부의 명칭을 각각 시설관리과와 세계문화부로 변경하며, 본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의 인력의 퇴직에 따라 사무운영 9급 2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문화전략팀장”을 “미래문화전략팀장 및 정책분석팀장”으로,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으로, 정책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통계 업무·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⑨ 정책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한 기획·예산 검토 및 조정·작성 및 활용 기반 구축과 관리 총괄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총괄
3. 통계 및 수치자료가 활용된 연구결과물의 정확성 검토 등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한 협력
과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5.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중문화산업과”를 “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
과”로, “부이사관 또는”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삭 제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한류 관련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5. 한류 문화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6.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 지원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 교류 추진
9. 한류 관련 공연,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

제15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한류관광 · 공연관광 · 스포츠관광”을 “공연관광 · 스포츠관광”으로 한다.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제20조제2항 중 “관리과”를 “시설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과장”을 각각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아시아부”를 “세계문화부”로, “아시아부장”을 “세계문화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시아부장”을 “세계문화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시아 관련”을 “세계 각지의”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9.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

제33조를 제9장의4제40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3조) 제1항 단서 중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을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웹사이트”를 “웹사이트 등”으로 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심사평가

11. 조직관리 · 혁신 · 감사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 보안·관인관리 및 문서수발·통제·발간·기록물 관리

1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5. 예산·회계 및 결산, 물품관리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제7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지원

제4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운영지원과·연구기획과·자료관리과·전시운영과·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획과장·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기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3. 교육장·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교재 및 영상물 개발·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관리·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홍보용 간행물·영상물 등의 제작·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3을 삭제한다.

제40조의5 앞에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삽입한다.

제46조제2항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별표 2의 정원 중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1명(행정사무관 1명),”을 “별표 2의 정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

에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을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정원 186명”을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61”을 “667”로 하고, 일반직 계 “654”를 “660”으로 하며, 서기관 “22”를 “2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65“를 ”166“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68“을 ”1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를 “3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9”를 “1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1의 2 중 총계 “669”를 “675”로 하고, 일반직 계 “662”를 “668”로 하며, 서기관 “22”를 “2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9"를 "180"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0"을 "172"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를 "82"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를 "3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9"를 "1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을 "276"으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6"을 "275"로 하며, 일반직 계 "103"을 "102"로 하고,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9"을 "588"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7"을 "5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6"을 "585"로 하고, 시설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31"을 "312"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를 "3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10"으로 하고, 서기관 "11"을 "1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사서사무관 "22"를 "21"로 하며,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를 "3"으로 하고, 사서주사 "48"을 "44"로 하며,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하며, 사서주사보 “63”을 “59”로 하고,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대체자료 작성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31”을 “312”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9”를 “3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10”으로 하고, 서기관 “11”을 “1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사서사무관 “24”를 “23”으로 하며,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를 “3”으로 하고, 사서주사 “50”을 “46”으로 하며,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하며, 사서주사보 “59”를 “55”로 하고,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대체자료 작성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59”를 “57”로 하고, 일반직 계 “59”를 “57”로 하고, 행정주사 “14”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59”를 “57”로 하고, 일반직 계 “59”를 “57”로 하고, 행정주사 “14”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61”을 “160”으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를 “159”으로 하며, 일반직 계 “160”을 “159”로 하고,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61”을 “160”으로 하고,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160”를 “159”으로 하며, 일반직 계 “160”을 “159”로 하고,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53”을 “52”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2”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임기제 대한민국의사박물관장(가급) “1”을 삭제하고, 임기제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급)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4를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47조제13항 본문 관련)”을 “(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47조제14항 관련)”을 “(제47조제1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제47조제15항”을 “제47조제16항”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47조제16항 관련)”을 “(제47조제1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에 조직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0명	2022년 6월 30일까지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8월 31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 당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별표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 당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별표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분석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책분석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책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보좌한다

[별표 8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제40조의제13항 관련)

총계	20
일반직 계	2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사서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4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사서주사보	4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전문경력관 나군(대체자료 작성담당)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 관 · 재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양성평 등정책담당관 및 <u>미래문화전략</u> <u>팀장</u>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 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은 서기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 장은 서기관 또는 <u>행정사무관</u> 으 로 보한다.	② ----- ----- ----- ----- <u>미래문화전략팀</u> <u>장 및 정책분석팀장</u> ----- ----- ----- ----- ----- ----- <u>행정사무관</u> 으 <u>로, 정책분석팀장은 서기관 또</u> <u>는 통계사무관</u> ----- -----.
③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17. (생 략) 18. <u>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u> <u>의 종합 · 조정 및 자체통계</u> <u>품질진단의 실시</u> 19. <u>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u>	③ ----- -----. 1.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
한 총괄·관리

20.·21. (생략)

④·⑤ (생략)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및 통계 업무·예산의 총괄·
조정·평가

3. ~ 7. (생략)

⑦ (생략)

⑧ 미래문화전략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20.·21.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

-- 예산-----

3.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
된 업무

⑨ 정책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
한 기획·예산 검토 및 조정
·작성 및 활용 기반 구축과
관리 총괄

		2. <u>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u> <u>및 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와</u> <u>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대</u> <u>한 품질관리 총괄</u> 3. <u>통계 및 수치자료가 활용된</u> <u>연구결과물의 정확성 검토 등</u> <u>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u> <u>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u> <u>시행</u> 4. <u>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통계</u> <u>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u> <u>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u> <u>항 총괄</u> 5. <u>그 밖의 문화체육관광 관련</u> <u>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u> <u>터에 관한 사항</u>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u>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u> <u>된 업무</u>	<u><삭 제></u>	
21.・22. (생략)	21.・22. (현행과 같음)	
④ ~ ⑬ (생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생략)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현행과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신설>

같음)

② -----

-----대중문화산업과 및 한류지원협력과-----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⑦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한류 관련 조사 · 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제15조(관광정책국) ①·② (생략)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13. ~ 15. (생략)

④·⑤ (생략)

⑥ 관광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⑦ (생략)

⑧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

4. 한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5. 한류 문화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 지원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 교류 추진

9. 한류 관련 공연,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

제15조(관광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 1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⑦ (현행과 같음)

⑧ -----

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한류관광·공연관광·스포츠
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
에 관한 사항

6. ~ 10. (생략)

⑨ (생략)

제20조(행정운영단) ① (생략)

② 행정운영단에 행정지원과·
박물관정보화과·관리과 및 고
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보화과장은 서기관으
로, 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
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행
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5. (생략)

⑥ (생략)

제21조(학예연구실) ① (생략)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연관광·스포츠관광 -----

6. ~ 10.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관리과-----

- 시설관리과장-----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설관리과장-----
-----.

1.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고역사부 · 미술부 · 아시아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
 리부장 · 고고역사부장 · 미술부
 장 · 아시아부장 및 보존과학부
 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⑦ 아시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 관련 고고학 · 미술사
 학 · 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
 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
 조사 · 발굴 · 수집 · 전시 · 고
 증 · 평가 · 분석 · 제도 · 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생 략)

⑧ (생 략)

제25조(어문연구실) ① · ② (생
 략)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세계문화부

--- 세계문화부장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세계문화부장-----
 -----.

1. 세계 각지의 -----

2.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문연구실)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

④ -----
 -----.

<신 설>

14. 공무원의 임용 · 복무 · 교육
훈련 · 연금 · 급여 등 인사에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 ⑥
(생 략)

⑦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대통령 · 국무총리 등 행사
홍보 지원(국민방한을 포함한
다)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운영
지원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

<신 설>

관한 사항

15. 예산 · 회계 및 결산, 물품관
리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 · 국무총리의 정상외
교 및 국민방한 행사 홍보지
원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
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운영
지원과 · 연구기획과 · 자료관리
과 · 전시운영과 · 교육과 및 교
류홍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연구기획과장 · 전시운영과
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

② (생 략)

<신 설>

<신 설>

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복제·복사·

<신 설>

모조·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기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전시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
· 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3. 교육장·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교재 및 영상물
개발·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관리·
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
구와의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
획의 수립·시행
4. 홍보용 간행물·영상물 등의
제작·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
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

제40조의3(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과·자료관리과·전시운영과·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사 기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③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복제·복사·
모조·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
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
· 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 및 시행

2. 상설·기획·특별 전시계획

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
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
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
· 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
램 개발·운영

3. 교육장·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교재 및 영상물
개발·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관리·
운영

⑥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
구와의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
획의 수립·시행

4. 홍보용 간행물·영상물 등의
제작·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
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
사 기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
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
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
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
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
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
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

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

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을 담
당하는 1명(행정사무관 1명), 인
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
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1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

z _____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명),-----

----- 정원 -----

(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⑧ ~ ⑫ (생략)

<신설>

⑬ ~ ⑰ (생략)

-----.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 4와 같다. 별표 8의 4의 정원 중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⑭ ~ ⑱ (현행 제13항 ~ 제17항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1</u>	<u>667</u>	+6
·	·	·	
·	·	·	
일반직 계	<u>654</u>	<u>660</u>	+6
·	·	·	
·	·	·	
서기관	<u>22</u>	<u>23</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 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 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 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u>41</u>	<u>40</u>	-1
	<u>165</u>	<u>166</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 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 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 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 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행정서기보 사무운영서기보 ·	<u>168</u> <u>89</u> <u>35</u> <u>9</u> <u>11</u> ·	<u>170</u> <u>90</u> <u>36</u> <u>11</u> <u>10</u> ·	+2 +1 +1 +2 -1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9</u>	<u>675</u>	+6
·	·	·	
·	·	·	
일반직 계	<u>662</u>	<u>668</u>	+6
·	·	·	
·	·	·	
서기관	<u>22</u>	<u>23</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1</u>	<u>40</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u>179</u>	<u>180</u>	+1
· 사서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 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 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170</u> ·	<u>172</u> ·	+2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 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 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1</u>	<u>82</u>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35</u>	<u>36</u>	+1
행정서기보 · ·	<u>9</u> · ·	<u>11</u> · ·	+2
사무운영서기보 ·	<u>11</u> ·	<u>10</u>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7</u>	<u>276</u>	-1
1.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제외한다.)	<u>276</u>	<u>275</u>	-1
·	·	·	
일반직 계	<u>103</u>	<u>102</u>	-1
·	·	·	
행정사무관	<u>8</u>	<u>7</u>	-1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9</u>	<u>588</u>	-1
1.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제외한다.)	<u>587</u>	<u>586</u>	-1
·	·	·	
일반직 계	<u>586</u>	<u>585</u>	-1
·	·	·	
시설서기	<u>3</u>	<u>2</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9</u>	<u>588</u>	-1
1.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제외한다.)	<u>587</u>	<u>586</u>	-1
·	·	·	
일반직 계	<u>586</u>	<u>585</u>	-1
·	·	·	
시설서기	<u>3</u>	<u>2</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1</u>	<u>312</u>	-19
1.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제외한다.)	<u>329</u>	<u>310</u>	-19
일반직 계	<u>329</u>	<u>310</u>	-19
·	·	·	
서기관	<u>11</u>	<u>10</u>	-1
·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u>2</u>	<u>1</u>	-1
·	·	·	
행정사무관	<u>4</u>	<u>3</u>	-1
·	·	·	
사서사무관	<u>22</u>	<u>21</u>	-1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삭 제></u>	-1
·	·	·	
행정주사	<u>12</u>	<u>11</u>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u>4</u>	<u>3</u>	-1
·	·	·	
사서주사	<u>48</u>	<u>44</u>	-4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	<u>1</u> .	<u><삭 제></u> .	-1
행정주사보	<u>11</u>	<u>10</u>	-1
사서주사보	<u>63</u>	<u>59</u>	-4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u>1</u> .	<u><삭 제></u> .	-1
전문경력관 나군(대체자료 작성담당) .	<u>1</u> .	<u><삭 제></u>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1</u>	<u>312</u>	-19
1.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제외한다.)	<u>329</u>	<u>310</u>	-19
일반직 계	<u>329</u>	<u>310</u>	-19
·	·	·	
서기관	<u>11</u>	<u>10</u>	-1
·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u>2</u>	<u>1</u>	-1
·	·	·	
행정사무관	<u>4</u>	<u>3</u>	-1
·	·	·	
사서사무관	<u>24</u>	<u>23</u>	-1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삭 제></u>	-1
·	·	·	
행정주사	<u>12</u>	<u>11</u>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u>4</u>	<u>3</u>	-1
·	·	·	
사서주사	<u>50</u>	<u>46</u>	-4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	<u>1</u> .	<u><삭 제></u> .	-1
행정주사보	<u>11</u>	<u>10</u>	-1
사서주사보	<u>59</u>	<u>55</u>	-4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u>1</u> .	<u><삭 제></u> .	-1
전문경력관 나군(대체자료 작성담당) .	<u>1</u> .	<u><삭 제></u>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u>	<u>57</u>	-2
일반직 계	<u>59</u>	<u>57</u>	-2
.	.	.	
행정주사	<u>14</u>	<u>13</u>	-1
.	.	.	
행정주사보	<u>7</u>	<u>6</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u>	<u>57</u>	-2
일반직 계	<u>59</u>	<u>57</u>	-2
·	·	·	
행정주사	<u>14</u>	<u>13</u>	-1
·	·	·	
행정주사보	<u>7</u>	<u>6</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1</u>	<u>160</u>	-1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60</u>	<u>159</u>	-1
일반직 계	<u>160</u>	<u>159</u>	-1
·	·	·	
행정서기보	<u>9</u>	<u>10</u>	+1
·			
기계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1</u>	<u>160</u>	-1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60</u>	<u>159</u>	-1
일반직 계	<u>160</u>	<u>159</u>	-1
·	·	·	
행정서기보	<u>9</u>	<u>10</u>	+1
·			
기계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u>	<u>52</u>	-1
일반직 계	<u>53</u>	<u>52</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u><신 설></u>	<u>1</u>	+1
.	.	.	
임기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장(가급)	<u>1</u>	<u><삭 제></u>	-1
임기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급)	<u>1</u>	<u><삭 제></u>	-1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8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신 설>	20	+20
일반직 계	<신 설>	20	+20
서기관	<신 설>	1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	<신 설>	1	+1
사서사무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신 설>	1	+1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신 설>	2	+2
사서주사	<신 설>	4	+4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1	+1
행정주사보	<신 설>	1	+1
사서주사보	<신 설>	4	+4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1	+1
전문경력관 나군 (대체자료 작성담당)	<신 설>	1	+1

